

LH 주거급여 콜센터 

1600-0777

(보건복지 콜센터 129)

※ 자세한 사항은 마이홈포털(www.myhome.go.kr)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리플렛의 내용은 사업추진과정 중에 변경·조정 될 수 있습니다.



5 기타 주거복지서비스 안내

매입·전세임대주택 경합시 가점 부여

매입·전세임대주택 1순위 입주희망자 간에 경합이 있는 경우 소득인정액 대비 임차료 비율이 30%를 넘는 신청인에게 2~5점의 가점을 부여합니다.

- **대상**
매입·전세임대주택 1순위 입주희망자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가점**
입주자 선정기준일 현재 소득인정액 대비 임차료 비율에 따라 가점부여

가. 80% 이상	▶ 5점
나. 65% 이상 80% 미만	▶ 4점
다. 50% 이상 65% 미만	▶ 3점
라. 30% 이상 50% 미만	▶ 2점

※ 소득인정액은 기초급여액 지급전 금액, 임차료는 주거급여액 차감후 금액을 의미
 ※ 임차료에는 보증금과 월 임차료를 모두 포함 단, 보증금은 연 4%를 적용하여 월차임으로 환산하여 적용

매입임대주택 보증금 대출

매입임대주택 입주자에게 버팀목 전세대출이 가능합니다.

※ 대출대상, 대출한도, 대출금리 등 자세한 사항은 업무취급 은행에 문의
 ※ 업무취급은행 : 우리은행, KB국민은행, IBK기업은행, NH농협, 신한은행, KEB하나은행

원스톱 주거지원안내서비스 마이홈

행복주택, 뉴스테이, 공공임대, 주거급여, 주택금융 등 정부의 주요 주거지원정책에 대한 통합 안내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주거문제에 대한 걱정과 궁금증을 인터넷, 전화, 방문상담, 모바일까지 마이홈에서 원스톱으로 해결해 드립니다!



-  마이홈 포털 | www.myhome.go.kr
-  마이홈 콜센터 | 1600-1004
-  마이홈 센터 | 전국 40개소 (마이홈포털에서 검색가능)
-  마이홈 모바일 앱 | 마이홈 앱 설치가능

6 맞춤형 급여

“생계·의료·주거·교육 지원”

- **지원대상**
소득·재산이 급여별 선정기준 이하,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 없음)




지원내용

급여종류	선정기준	지원내용
생계	중위소득 29%	기본적으로 필요한 생활비 지원
의료	중위소득 40%	의료서비스 이용 시 본인부담금 지원
주거	중위소득 43%	임차가구는 전월세 비용, 자가가구는 집수리 지원
교육	중위소득 50%	초·중·고 학생 입학금, 수업료, 학용품비 등 지원

신청방법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상담문의

-  생계·의료·교육급여 보건복지콜센터 129
-  주거급여 콜센터 1600-0777
-  읍·면·동 주민센터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 www.mohw.go.kr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 www.molit.go.kr

● 교육부 홈페이지 | www.moe.go.kr

● 복지포털 복지로 | www.bokjiro.go.kr

전월세료를 지원하고,
낡은 집은 고쳐드립니다

주거급여 신청하세요

임차가구
전월세
지원

자가가구
집수리
지원



1 주거급여 제도 안내

주거급여란?

기초생활보장제도 내 주거급여를 개편, 소득·주거형태·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 하는 제도입니다.

(2015년 7월부터 시행)

※ 근거법 : 「주거급여법」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중전 제도에 비해 **지원대상이 크게 확대**(중위소득의 약33%→43%) 되고, **주거비 부담수준에 따라 지급액이 현실화**되었습니다.

지원 대상은?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43% 이하 이면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임차가구·자가가구)입니다.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중위소득 : 전체가구를 소득순으로 순위를 매긴 다음, 중간순서 가구의 소득수준

중위소득 43%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70	119	154	189	224	259	294

※ 8인 이상 가구의 주거급여 선정기준 : 1인 증가 시마다 349,339원씩 증가 (8인 가구 : 3,285,672원)

부양의무자 기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 :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 제외)

지원 절차는?

급여신청 시 ①소득·재산, 부양의무자 조사와 ②임대차계약관계 등 주택조사를 거쳐 해당가구에 지원됩니다.



2 임차가구 지원

임차가구 지원기준은?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는 임차가구에게는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수급자의 실제임차료를 지원합니다.

※ 기준임대료와 실제임차료 중 작은 금액을 지급

※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는 자기부담분을 차감

※ 급여 산정금액이 1만원 미만인 경우, 1만원을 지급

- ▶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 「기준임대료(실제임차료)」 전액 지원
- ▶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 「기준임대료(실제임차료) - 자기부담분*」 지원
- ※ 자기부담분 =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 × 30%

생계급여 선정기준(중위소득의 29% 이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47	80	104	127	151	174	198

※ 8인 이상 가구의 생계급여 선정기준 : 1인 증가 시마다 235,600원씩 증가 (8인 가구 : 2,215,917원)

기준임대료 최저주거기준을 고려하여 지역별·가구원수별로 산정

구분	1급지 (서울)	2급지 (경기·인천)	3급지 (광역시·세종)	4급지 (그 외)
1인 가구	19.5	17.4	14.3	13.3
2인 가구	22.5	19.5	15.4	14.3
3인 가구	26.6	23.6	18.4	17.4
4인 가구	30.7	27.6	21.5	19.5
5인 가구	31.7	28.7	22.5	20.5
6인 가구	36.9	33.8	25.6	23.6

※ 가구원수가 7인 이상인 경우, 가구원 2인 증가할 때마다 기준임대료 10% 증가

실제임차료 임대차계약서의 보증금과 월차임을 합하여 산정

※ 보증금은 연 4%를 적용하여 월차임으로 환산

(예시) 보증금 1,000만원, 월차임 10만원인 경우 실제임차료는 133,333원

예시 ① 서울지역 거주, 소득인정액 80만원, 월세 30만원인 A씨(3인 가구)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이므로
서울 3인 가구 기준임대료 26.6만원 전액 지급(기준임대료 상한)

예시 ② 인천지역 거주, 소득인정액 50만원, 전세 3천만원인 B씨(1인 가구)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초과하므로 실제 임차료인 10만원에서 자기부담분(③천원) 차감 후 지급

3 자가가구 지원

자가가구 지원기준은?

주택 등을 소유하고 그 집에 거주하는 자가가구에게는 구조안전·설비·마감 등 주택의 노후도를 평가(경·중·대보수로 구분)하여 종합적인 주택개량을 지원합니다.

또한, 장애인에 대해서는 주거약자용 편의시설(380만원 한도)을 추가로 설치 해 드리며,

고령자(만 65세 이상)에 대해 주거약자용 편의시설을 보수범위별 수선비용 지원 금액 범위 내에서 설치해 드립니다.

※ 편의시설 : 단차제거, 문폭 확대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설

주택의 노후도 평가

현장실사를 통해 구조안전·설비·마감 등 최저주거 기준 충족여부를 기준으로 평가(19개 항목)

- 🔧 **구조안전**(3개 항목) 기초·지반 침하, 지붕 누수, 벽체 균열
- 🔧 **설비상태**(12개 항목) 부엌, 욕실, 창호, 단열, 급수, 오수, 난방, 내선, 조명 등
- 🔧 **마감상태**(4개 항목) 벽, 천장, 바닥, 문틀 및 문짝 마감

주택개량 지원 내용

구분	경 보수	중 보수	대 보수
수선비용	350만원	650만원	950만원
수선주기	3년	5년	7년
수선예시	도배, 장판 등	오·급수, 난방 등	지붕, 기둥 등

–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에 따라 100~80%까지 차등지원

구분	①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	②중위소득 35% 이하	③중위소득 43% 이하
지원율	100% 지원	90% 지원	80% 지원

(예시) 대보수(950만원) 대상이며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35% 초과~43% 이하일 때, 지원금액의 80%인 76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

예시 ① 소득인정액 80만원, 난방시설 보수, 단차 제거 등이 필요한 장애인 A씨(3인 가구)
난방시설 보수 등 중보수 지원(650만원 한도) + 단차제거 등 주거약자용 편의시설 설치(380만원 한도)

예시 ② 소득인정액 30만원, 도배·장판 보수 등이 필요한 70세 고령자 B씨(1인 가구)
도배·장판 보수 등 경보수 지원(350만원 한도) (단차제거 등 주거약자용 편의시설 설치 포함)

4 신청안내 및 주택조사

신청방법은?

신청장소

읍·면·동 주민센터

구비서류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동 주민센터 비치)
- 소득·재산 신고서,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신고서(동 주민센터 비치)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동 주민센터 비치, 부양의무자 서명 필요)
-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여권 등)
- 임대차계약서(사용대차확인서, 전대차계약서 등) 사본
- 통장 사본

※ 고용입금확인서, 장애인등록증, 제적등본 등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주택조사란?

주택조사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신청인의 임대차계약관계, 주택상태 등을 조사하기 위하여 사전에 조사안내문 발송 및 방문 약속 후 해당가구를 방문 조사 합니다.

주택조사 내용은?

임차가구

임대차계약관계, 실제 거주 여부, 주택현황(유형, 시설, 상태 등) 등

자가가구

물리적 상태(구조안전·설비·마감 등), 실제 거주 여부 등

※ 주택조사를 받지 않으면 급여가 지급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조사에 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조사를 통해 파악된 비주택(쪽방, 고시원, 여관 등) 거주자에게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직접 전세·매입임대 입주를 지원합니다.

주택조사 절차는?

